

식품산업과 관세정책

송 성 완 / 한국식품공업협회

I. 序 論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불안과 IMF의 권고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무더기 기업도산이라는 벼랑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수출입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대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 품목도 일부 주력 품목 위주로 축소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모든 품목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한계상황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국내식품산업은 이미 IMF시대 이전에 저가의 수입식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열악한 내수시장은 나날이 잠식당하고 있었다. 특히, 식품관련 관세율 구조는 식품원재료 관세율이 완제품보다 고관세인 역관세 구조로 되어 있어 값싼 원료를 사용한 수입완제품은 비싼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시장에 유입되면서 원재료 수급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

해 있는 국내식품산업에 가격경쟁력 열위라는 구조적인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관세율 정책의 문제점은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이 거대한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후발개도국의 노동력과 저렴한 원료농산물을 이용하여 국내식품시장을 공략할 경우 IMF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식품산업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식품산업이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양한 국민의 기호욕구 충족은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나 국민보건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수입식품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관세의 대산업 중립화로 산업간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균등관세제도는 반드시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食品產業의 現況

1. 식품산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은 제조업의 한분야로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임산부산물 등의 원료농축수산물을 노동, 자본, 기술, 에너지를 이용하여 식용제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식용에 필요한 중간재 형태로 변형시키는 음식료품제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투입원료와 가공도를 기준으로 제분, 유가공, 유지가공, 수산물가공 등과 같이 농수축산물을 가공·처리하여 최종소비자나 다른 식품공업에 원료로 공급하는 1次 식품산업과, 국내외적으로 1次 식품산업의 생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는 2次 식품산업, 1次·2次 식품산업의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의 가공도를 더욱 높여 공급하는 3次 식품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식생활변화에 따라 3次 식품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계식품산업의 추이

세계식품산업은 인구 및 영양 섭취의

증가 추세에 따른 수요증대와 함께 타산업 등 비농업부문종사자의 증가,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식품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하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의 양적증가는 둔화되는 대신 소비수준의 질적향상과 소비양태의 간편화·기호화·기능화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이 자연적·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유한 식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양의 식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주요 식품의 교역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의 식품산업은 식품소비의 낮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산업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0~1994년간 세계식품산업 총생산은 연평균 1.7%의 증가에 그쳤는데,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연평균 3.5%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여타산업과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식음료품에 대한 지출비중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완만한 1.0%의 성장에 머물렀다.

표 1. 세계식품산업 생산지수 추이

구 분		1990	1992	1994	(단위 : %) 연평균증가율 (1990~94)
식 품 산 업	세 계	121.9	125.5	130.2	1.7
	선 진 국	114.8	111.4	119.4	1.0
	개 도 국	146.5	157.2	168.3	3.5
전 산 업	세 계	122.8	122.3	128.6	1.2
	선 진 국	121.7	119.3	124.2	0.5
	개 도 국	127.0	133.7	145.5	3.5

주 : 1980年=100기준임.

자료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1996. 2

3. 국내식품산업 현황

1) 식품산업의 제조업상 비중

국내식품산업은 80년대 이후의 수요둔화가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및 부가 가치는 1995년 현재 제조업의 6~8%를 점하고 있다. 소비구조에 있어서는 식생활 양식의 서구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제품, 육류제품, 건강식품, 기호식품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곡물류 등 주

식관련 품목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식품산업의 제조업상 비중

구 分	1985	1988	1991	1994	(단위 : %) 1995
사 업 체 수	10.5	7.8	6.6	6.4	6.5
종 업 원 수	7.6	6.9	6.9	6.8	7.0
생 산 액	10.1	8.6	8.3	7.9	7.2
부 가 가 치	9.2	7.9	8.0	7.7	6.8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각년도

2) 식품산업의 구조

국내식품산업은 1994년 현재 5,858개업체 20여만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3조 5,451억원 정도이며, 부문별로는 제빵, 제과, 제면, 낙농품 등의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 현재 각 부문의 비중과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육가공부문은 경제성장, 편의성의 추구 및 식생활양식의 서구화로 높

은 성장세를 보여 식품산업의 부가가치중 동부분의 비중이 7.4%로 증가하였으며, 곡물가공부문도 최근 주식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품개발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음료품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제과, 제빵, 제면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에 따라 15.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부문별 생산추이

구 分	분류기호	업체수 ¹⁾	생산액(%)			부가가치액(%)		
			'92	'93	'94	'92	'93	'94
육 가 공	1511	377	7.4	7.4	8.7	6.5	7.4	7.4
수 산 물 가 공	1512	899	7.4	7.7	6.8	7.1	7.4	6.1
과 일 · 채 소 가 공	1513	408	3.4	3.7	3.1	3.2	3.6	3.1
유 지	1514	69	3.2	2.0	2.0	2.0	1.2	1.4
낙 농 품	1520	116	12.2	11.9	12.8	11.0	12.1	12.0
곡 물 가 공	1531	531	5.5	6.9	6.8	3.5	4.1	4.2
사 료	1533	156	13.1	13.5	12.4	9.7	9.7	9.1
제 빵 · 제 과 · 제 면 ²⁾	1541, 1544	605	10.7	11.7	12.9	12.3	13.2	15.9
설 탕	1542	5	2.0	1.7	1.6	2.0	1.5	1.3
조 미 료 · 식 품 첨 가 물	1545	245	5.2	5.1	5.8	5.8	6.2	6.7
주 류 ³⁾	1551, 1552, 1553	296	9.4	9.4	9.8	11.6	11.9	12.6
비 알 콜 성 음 료	1544	212	7.7	6.7	8.4	10.7	8.3	10.8
기 타	—	1,939	12.8	12.3	8.9	14.6	13.1	9.4
계	—	5,858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업체수는 '94년도 통계임.

2) 제빵, 제과, 제면은 빵 및 곡분과자제조업,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업을 포함한 통계임.

3) 주류는 1551, 1552, 1553을 포함한 통계치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총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1994년 현재 종업원 50인미만의 영세사업체가 전체사업체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100인이상의 기업이 67.9%를 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종래의 소수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점차 영세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식음료품산업의 사업체규모별 구조(1994년)

사업체당 종업원수	식음료품산업				제조업				(단위 : %, 백만원)
	사업체수 비 중	종업원수 비 중	생산액 비 중	1인당 생산액	사업체수 비 중	종업원수 비 중	생산액 비 중	1인당 생산액	
5~9인	39.5	7.7	3.6	55.2	41.4	8.5	3.5	41.5	
10~19인	26.9	10.5	4.7	51.9	28.2	11.8	5.7	49.4	
20~49인	20.4	18.3	10.5	66.9	20.1	19.1	11.5	61.6	
50~99인	6.7	13.7	13.3	114.1	6.0	12.9	9.8	77.4	
100~199인	3.7	14.7	19.6	157.0	2.5	10.7	10.6	101.0	
200~299인	1.4	9.7	15.8	192.2	0.8	6.1	6.9	115.3	
300~499인	0.8	9.5	15.0	185.2	0.4	5.4	7.0	132.1	
500인 이상	0.6	15.9	17.5	129.3	0.6	25.5	45.0	180.9	
합 계	100.0	100.0	100.0	117.4	100.0	100.0	100.0	102.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4

식품산업의 사업체당 종업원과 평균생산액은 1994년 현재 34명, 40억 1,900만으로 제조업 평균수준보다 높으며, 기업규모별 생산성은 대체로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생산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업원 200~299인 규모의 경우가 1인당 생산액 192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III. 식품관련 관세율제도

1. 관세정책의 의의

관세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각국의 대외경제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세정책은 산업의 구조를 결정하고, 무역의 크기와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정책의 주요수단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수준을 결정하는

관세율(종량세의 경우는 관세액)정책과 법률로 정해진 관세수준을 경우에 따라서 경감하는 관세감면, 관세환급, 그리고 탄력관세 등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되면 수입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인하되면 수입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관세는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고, 간접세의 일종으로 전가되며, 생활필수품에는 경과되고, 사치품이나 완제품에는 중과되는 등의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관세의 효과는 경제적효과, 생산효과, 소비효과, 세입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소득효과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기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주적인 관세제도의 수립은 1949년 11월 정부수립을 계기로하여 군정기까지 시행하여 오던 일제의 다원화된 관세법규를 통합, 전문252조로 된 단일화된 관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법률 제67호로 공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러한 관세율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변천과정에서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개정을 통하여 1997년 소폭적인 개편작업에 이르기까지 무려 16차의 부분적인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제12차 개정부터 그 주요 관세율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2차 개정(1983. 12. 29 법률 제 3666호)

1983년 개정된 관세율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정부주도형의 보호와 지원정책

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간주도형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의 보호관세율체계를 경쟁촉진적 관세율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관세율구조를 개편하였다.

첫째, 전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즉,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비경쟁원자재의 세율은 1984년에 5%로 인하하여 1988년까지 5%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쟁원자재에 대해서는 10%로 책정하였다.

둘째, 과보호된 투입재, 생산재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관련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셋째, 소비재에 대한 고보호 세율을 인하하여 내수위주 산업보호를 지향하였다.

표 5. 식품관련 관세율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관련 산업
		1984	1988	
향료원료	30	20	20	
유지류	30	30	20	
제과, 제빵	50	40	20	
마가린	50	40	20	
유지	20(할12)	12	10	
팜유	20(할12)	12	10	
바닐라(두)	40	20	20	
바닐라(유)	30	20	20	

1983년 관세율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은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의 확립과 공평하고 능률 위주의 경제활동의 여건조성 등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식품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서 완제품의 관세율이 20%로 중심세율화 됨으로써 원료와 완제품간의 역관세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2) 제13차 개정(1988. 12. 26 법률 제 4027호)

1988년도 관세율구조 개편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준, 재정수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표 6〉과 같이 단계적으로 평균 관세율 수준을 인하하였다.

표 6. 평균 관세율 수준

(단위 : %)

구 분	종 전 (1988)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				
		'89	'90	'91	'92	'93
전 체	18.1	12.7	11.4	10.1	8.9	7.9
공 산 품	16.9	11.2	9.7	8.4	7.1	6.2
농 산 물	25.2	20.6	19.9	18.5	17.8	16.6
중 심 관 세 율	20	15	13	11	9	8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1983년 이후 계속 적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인하 수준을 미리 알려 국내산업이 이에 미리 대비토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관세인하 압력을 사전에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3) 제14차 개정(1990. 12. 31 법률 제 4286호) -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 1년 순연

1990년 12월로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른 재정수입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한만료 수입분 방위세를 관세로 일부 한시적으로 흡수 조정하고자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시켰다.

4) 제15차 개정(1995. 12. 6 법률 4982 호, 2개품목에 한해 소폭개정)

수출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 면세를 받는 콘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 관리 절차를 폐지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관행과 일치 시키는 수

준의 소폭개정을 하였다.

5) 제16차 개정(1997. 12)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천연고무 등 25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였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커피두 등 11개품목만이 인하되었고 선진국(G-7: 평균 19.9%, OECD: 평균 31.3%)에 비해 저관세율인(기본관세율: 8%) 츄잉껌 등 식품완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1997관세율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3. 식품관련 관세율 구조

1) 식품관련 관세율정책 현황

국내식품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가 농축수산물로서 완제품보다 원자재의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품목에 대해 조정된 세(당면, 참치통조림 등)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WTO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일부원료는 비현실적인 고관세의 TE 등을 부과하고 있어 이의 재평가가 시급하다.

표 7. 원재료와 완제품의 관세율 비교

식 품 원 재 료		관 련 완 제 품	
품 명	관세율 (%)	품 명	관세율 (%)
분유 등의 유제품	40	과자, 빵, 아이스크림	8
아몬드, 캐슈넛 등 견과류	30	과자, 빵, 아이스크림	8
낙화생, 해바라기씨유	30	마아가린, 쇼트닝	8
유 당	20	초코릿과자 아이스크림	8

2) 문제점 및 개편방향

현행 식품관련 관세율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완제품관세율이 원료보다 낮거나 동등하여 완제품의 수입을 조장하는 것과 원료조달을 왜곡하는 유사대체물품간 관세율의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유지류의 경우 대두유 8%, 옥수수유 8%, 해바라기씨유 25%, 유채유 30%로 이들 식물성유지류 등의 사용용도는 같으나 관세율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식물성유지류의 국제가격변동을 원가에 탄력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G-7국가, OECD국가 등)의 경우 식품관련 관세율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외국식품은 국내시장에 낮은 관세로 손쉽게 수입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식품은 높은 관세에 따른 관세장벽으로 수출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8. G-7 국가 및 OECD국가와의 관세율 비교

구 분	껌	캔 디	비스킷	초코렛	아이스크림	평 균
한 국	8.0	8.0	8.0	8.0	8.0	8.0
G-7국가 (평균)	16.2	19.6	21.1	20.7	21.6	19.9
OECD국가 (평균)	27.9	30.8	30.7	31.9	34.9	31.8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관세율 구조는 완제품은 우리나라의 주요경쟁 상대국인 G-7국가 및 OECD국가의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원료의 경우 국내 비생산품목은 0~3% 이내로, 국내에서 생산되나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5~8%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나치게 균등관세율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식품산업의 경우는 관세율체계가 오히려 역관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세율체계는 그 동안의 균등관세율체계를 지향하는 관세정책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식품산업의 경쟁력 배양 등 특정산업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인 관세율 정책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인하 예시제도의 계속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식품완제품 관련 현행 관세율은 중심세율 8%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할 여지가 없으며, 만일 매년 일정비율로 인하한다면 그 인하폭이 지나치게 적어 산업계에 대한 충격완화라는 당초 예시제의 본래 취지에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IV. 식품관련 관세율정책의 운영방향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균등관세율제도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

V. 結 論

1984년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균등관세율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농업과 소비자의 보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 원자재의 관세율은 20~40%로 높고 완제품의 관세율은 중심세율인 8%로 낮아 원료와 완제품간에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의 내수시장은 과자,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다품종대량의 저가수입식품이 침투하여 국내 식품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절대량이 부족한 원료는 중심세율 8% 이하로 인하하여야 하며, 중심세율을 인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품완제품의 관세율인상도 시급히 단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은 장기적으로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식품산업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원료, 중간재, 완제품간에 차등관세율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 IMF시대에 환율불안과 고금리, 역관세 현상이라는 三重苦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식품산업이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율정책의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第 143 號

- 1970年 10月 28日 登錄/마-355호
- 1998年 3月 31日 發行(3月號)
- 發行兼 編輯人/千命基
- 發行處/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 瑞草區 方背洞 1002-6)
- 印刷人/株式會社 文 榮 社 電話/504-2275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실천강령을 준수한다.

